

의안번호	제 250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
번호

250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,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2조)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의 마련 시행 (안 제3조)
-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(안 제4조)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(안 제5조)
-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3항 및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4.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3조(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교통·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
2.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·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
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
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·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

제4조(의견의 수렴)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,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5조(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)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·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.

제6조(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)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 2.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한다)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생활인구”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
 - 나.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- 다.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제9조(시·군·구 및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인구감소 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2. 제3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
4.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
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, 지역 대표성,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제11조(생활권 연계·협력 추진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(이하 “생활권”이라 한다)을 설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,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,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·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·도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·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·교육·의료·환경·복지·문화·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3. 대학·기업·연구소·비영리단체·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·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단체, 법인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·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
2.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
3.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·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4.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.

제18조(생활환경·경관의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·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(문화기반의 확충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7조(노후·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)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·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

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

제13조(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·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·허가·승인·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
2.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

□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제13조(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
3.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
4.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 (안 제2조)

3. 관련조문

- 위원회 출석수당 등 (안 제2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위원회 출석수당(연간) : 130,000원 × 15명 × 연2회 = 3,900천원
- * 출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, 초과수당(2시간 초과) 30천원

나. 추계 결과 : 연간 3,900천원,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9,5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 장기봉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3,900	3,900	3,900	3,900	3,900	19,500
위원회 수당	3,900	3,900	3,900	3,900	3,900	19,5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,900	3,900	3,900	3,900	19,500
	지방세	3,900	3,900	3,900	3,900	19,5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